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8. 11. 정성국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8.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5.9.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8.)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5.12.9.)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성국의원)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과정 동안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서는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하고 있음.

때문에,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통상 21일 이상 소요) 나기까지 오히려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휴직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해·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윤상열)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 및 매뉴얼에 따르면,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대략 21일 이상)한 후 교육장이 적용(14일 이내)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이 분리되는 기간(7일 이내)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분리조치가 종료된 후부터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적용되기 전까지, 피해교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와 유사한

환경에서 침해학생과 마주하는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음.

개정안에 따라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긴급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교원은 본인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닌 학생과 분리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가능한 경우 해당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의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절차와 「학교폭력예방법」의 긴급조치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침해학생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가 적용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침해학생이 긴급하게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출석일수 산입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학생의 조치 관련 결석의 출석일수 산입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침해학생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안 제12항), 침해학생이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3항), 이와 관련한 부칙의 적용례를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에서 “제25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제9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부분은”으로 수정함(안 부칙 제2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5조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을 “조치를 받은 경우,”로,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를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1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⑫ 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을 “제25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제9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부분은”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5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 ⑧ (생략)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u>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u>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u>심리치료를 받은 경우</u>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 ⑧ (개정안과 같음) ⑬ ----- ----- ----- -- <u>조치를 받은 경우</u> , ----- ----- ----- <u>심리치료를 받은 경우</u> , 제9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 ----- ----- ----- -----.
⑩ (생략)	⑩ (현행과 같음)	⑭ (개정안 제10항과 같음)
<신설>	⑪ <u>고등학교 이하</u>	⑨ (개정안 제11항

<u>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u> <u><신 설></u>	과 같음) <u>⑫ 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출석정</u>
---	---

		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 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는 등 적절한 절차 를 거쳐야 한다.
<u><신 설></u>	⑫ 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제2항 제4호의 조치를 하 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 회의 조치 결정 시 까지로 정할 수 있 다.	⑩ 제9항----- ----- ----- ----- ----- ----- ----- ----- ----- -----
<u><신 설></u>	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1항에 따른 조 치를 한 때에는 침 해학생과 그 보호 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하며, 침해 학생이 해당 조치 를 거부하거나 회 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	⑪ ----- ----- ----- 제9항----- ----- ----- ----- ----- -----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9항) 중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을 “조치를 받은 경우,”로,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를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한다.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

로 정할 수 있다.

⑪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⑫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제25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제9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 ⑧ (생략)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u>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u> ⑩ <u>제9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u>
<u><신 설></u>	

<신 설>

<신 설>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⑪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⑫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⑬ -----
-----조치
를 받은 경우, -----
----- 심리치
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
를 받은 경우 -----

-----.

<u>⑩</u> · <u>⑪</u> (생략)	<u>⑭</u> · <u>⑮</u>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	--